

"서울, 새로운 탄생"

서울특별시

우편번호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 전화 (02) 731-6499 / 전송 (02) 731-6790

문서번호 : 주기 58520 - 507

시행일자 : '94. 2.

경유 : (제 1 안)

수신 : 내부 결

참조 :



취급		시	장
보존		영장 법무담당관 법제심사계장 하	
국장	"전 결"		
과장	thos		
계장	우		
기안	이대형		협조

제 목 :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저소득전세입자 보증금융자지원 업무완화(방침 제253호, '94.2.4)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조례개정의 사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안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별첨

나. 입법예고기간 : '94.2.15 ~ 2.28 (14일간)

첨 부 :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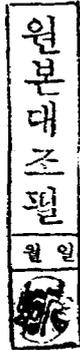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제 2 안)

수신 : 공보관

참조 : 공보1담당관

제 목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시보게제 의뢰



1.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사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시보게제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안 : 별첨

173 174 163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4 - 호

1994. 2. 15	1994. 2. 15	1994. 2. 15
1994. 2. 15	1994. 2. 15	1994. 2. 15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년 2 월 15 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 사유

- 전세자금 용자금의 상환기간은 2년이나 상환기간 도래전에 용자수혜자가 타구로 전출시에는 용자금을 일시상환토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 타구로 전출시에도 2년동안은 전세자금의 용자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저소득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함

2. 주요 골자

- "용자받을 당시의 거주지 구의 관할구역외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때는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4.2.28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731-6499, 731-6870)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원본내조필
원인
164

+ 174

175

164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입자용자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용자금의 상환등) ①용자금의 상환은 용자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상
환하여야 한다.

1. 용자금을 용자목적외에 사용한 때
2. < 삭 제 >
3. 용자금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 때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전세자금용자를 받았거나 전세자금용
자 신청이 접수된 용자금상환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한다

